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. 2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1.14. 김성희 의원 외 7명
- 나. 회부일자: 2022.1.24.
- 다. 상정일자: 제252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22.1.24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김성희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다양한 교통민원신고 유형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두어 좀 더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2)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3)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조례안은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- 본 개정조례안은
다양한 교통민원신고 유형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두어 좀 더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내용으로는
(안 제8조)에는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(안 제9조)에는 자문위원 신설에 따른 비밀 준수자에 자문위원을 추가하고
(안 제12조)에는 자문위원 신설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에 자문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임.

- 검토의견으로는
주민으로부터 신고된 버스, 택시 등의 교통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, 심의위원 구성원이 교통현장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문위원을 두고 민원 내용에 대한 심의 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여 교통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나아가 좀 더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, 지방자치법 제130조(자문 기관의 설치 등) 제1항1)에 근거하여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바, 본 개정 조례안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자문에만 응하고, 심의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-
- 1)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